

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관련 법률시행에 따른 후속조치 시행안내

1. 안내배경

◎ 「초·중등교육법」 및 「유아교육법」에 교사자격* 취득 결격사유** 신설 개정 법률 공포('20.12.22.) 및 시행 예정('21.6.23. 이후 교사자격검정신청자부터 적용)

* 정교사(1·2급), 전문상담·보간·영양·사서교사(1·2급), 실기교사, 준교사 (재발급, 부전공 제외)

** 성범죄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의 교사자격취득 제한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2

(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1.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3.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9조 (교원자격무시험검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에 「유아교육법」 제22조의2제1호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2제1호에 따른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를 첨부하여 교육감 또는 대학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안내대상: 2021.06.23 이후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신청자 및 교원자격증 취득(예정) 대상자

3. 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관련 후속조치

가. 성범죄경력 확인

- 1) 조회방법: 대학 소재의 관할 경찰서에 공문으로 일괄조회 요청 예정
- 2) 교사자격 취득 신청 시, 성범죄경력이 일괄 조회됨을 교사자격 취득 신청자에게

사전안내 필요

나.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검진 관련 안내

-교사자격 취득신청자가 의료기관을 통해 개별 진단 후,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를 제출

1) 검진방법: 소변검사로 실시(혈액, X-ray 검사 방식도 가능)

- ※ (TBPE검사) 마약류 사용에 대한 전반적 검사(일부 마약류 외 약물도 양성반응 가능)
(4대 마약 시약검사) 각 마약류 사용여부에 대한 정밀 검사(검사 신뢰도 상승)

2) 검진비용

- 일반의료기관: 5,000~25,000원 → 진단서 포함시 15,000~35,000원 예상
- 한국건강관리협회: 국가건강검진 병행시 5,000원/비병행시 6,000원
→ 진단서 포함시 10,000원 추가

3) 검진기관

- 가) 보건소는 판별검사가 불가, 건강검진센터, 정신건강의학과, 가정의학과, 내과 등에서 검사 후, 진단서 등 발급 가능(사전예약 필요)
- 나) 법무부 지정기관: 마약검사 가능여부 사전문의 후, 검사 가능
 - ※ www.hikorea.go.kr 탑재된 취업비자 입국 외국인 대상 마약류 검진기관 참조
 - ※ 검사결과통보서(=마약검사결과지 등) 발급 가능 여부는 의료기관마다 상이하므로, 반드시 사전 문의 필요
- 다) 한국건강관리협회(교육부 협약기관)

※교육부와 협력체결을 맺은 한국건강관리협회를 통한 검사를 권장 [참고1/참고2]

4) 서류 유효기간(*18개월 이내)

- 교사 자격취득 신청일 기준 전년도 이후부터 신청일까지 검진·발급된 서류까지 인정
(예시) 딱수년도 국가건강검진 대상인 23년 8월 졸업예정자의 경우, 22년 1월~23년 8월 무시험검정 신청일 이전까지 검진·발급된 검진 결과 인정 가능

5) 참고사항

- ※ 일부 치료목적 약물 복용자는 TBPE ‘양성’반응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 진단서’를 제출해야 함.
- ※ 타 법령을 근거로 한 마약류 중독검진 결과(면허 취득, 채용 신청용 등)의 경우, ‘마약류 중독자가 아님’이 명시 또는 명확한 확인이 가능할 경우, 준용 가능
- ※ 검사결과통보서(=마약검사결과지 등) 발급 가능 여부는 의료기관마다 상이하므로, 반드시 사전 문의 필요
- ※ 2차 검사로 실시 가능한 ‘4대 마약 시약검사’는 TBPE 검사 비용보다 많은 비용 소요
- ※ 국가건강검진에 마약류 검사를 포함한 검진 결과 인정 가능
(한국건강관리협회 국가건강검진 시 포함 가능, 기타 기관 문의 필요)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9조 에 따라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여부 판별을 위한 진단,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 비용은 본인이 부담함.

건강 진단서

원부대조필 인

병록번호 _____
 연번 _____
 주민등록번호 _____ - _____

성명		성별		생년월일		연령	
주소				전화			
병명							
소견	<p>위 사람은 「유아교육법」 제22조의2 및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2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과 관련하여</p> <p>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진단함</p> <p>위의 판단은 진단일 현재의 의학적 검사와 아래 표시한 검사 결과에 근거한 것임</p>						
비고							
용도	자격취득 결격사유 확인용			진단일			
진단을 위해 시행한 검사	<input type="checkbox"/> TBPE <input type="checkbox"/> 진단시약검사 <input type="checkbox"/> 기 타()						

발행일 :
 의료기관 :
 주소 및 명칭 :
 전화 및 FAX :
 면허번호 : 제 _____ 호 의사성명 _____ (인)

※ 상기 진단서는 예시로, 의료기관에 따라 양식이 달라질 수 있음

접수번호	
------	--

교사자격취득용 검사결과통보서			
구분	시험시행기관	접수번호	성명
검사시행			(한글)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집)
			휴대폰)

검사내역			
TBPE검사		기준범위	

위와 같이 검사하였습니다.

2021년 00월 00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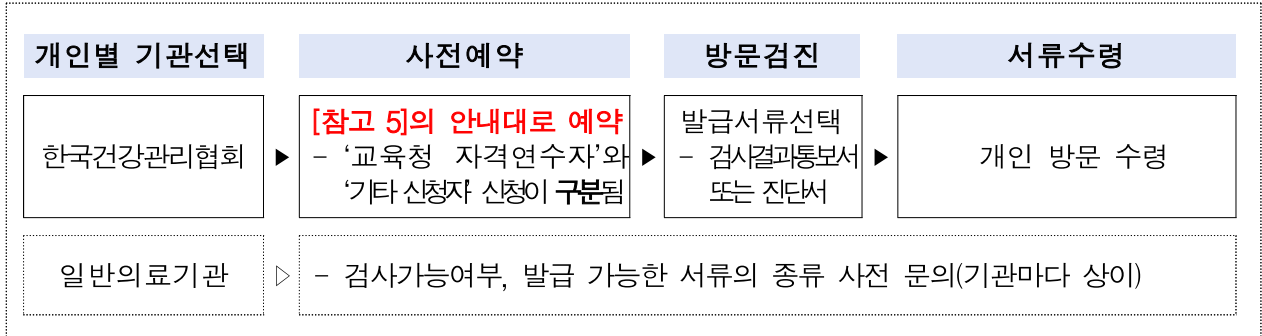
담당의사: (인)

의사소견	
종합판정	
판정보류 소견	
<p>위와 같이 판정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1년 00월 00일</p> <p>검사 기관 (인)</p>	
사용제한	교원양성기관 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확인용도 외 專用(전용)금지

※ 결과통보서는 기관마다 발급가능여부가 상이하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교육부 협약 체결에 따라 전국 '건강관리협회-메디체크'에서 발급 가능)

[참고1] 한국건강관리협회(교육부 협약기관) 검진안내

- (검진신청) 교사자격 취득을 신청하려는 사람에 한해 '21.6.23. 이후 마약류 검사 가능



※ (검사결과통보서) 민감정보가 포함된 내용으로, 개인별 의료기관 방문 수령 필요

- (검진내용 및 비용) 소변검사를 통한 TBPE검사 후, 서류* 발급
* (TBPE검사+검사결과통보서) 국가건강검진 병행시 5,000원 / 비병행시 6,000원
→ (+진단서) 10,000원 추가

참고2

한국건강관리협회(메디체크) 결격사유 검진 방법

- 검사결과 통보 방법이 상이하니, 수검자의 소속 또는 자격취득 상황에 따라 반드시 아래 예약명으로 예약해야 합니다.

☐ 교사자격취득자의 예약명(대학원 등을 통한 자격취득 현직교원 포함)

수검자 소속	예약명	비고
교육대, 사범대, 일반대 교육과, 교직과정, 교육대학원, 전문대, 산업대, 방통대, 기타양성대학 (대학생, 현직교사 포함)	교사자격취득용 검사-대학 (대학명이 아님. '대학'으로 예약)	검사결과 통보서 방문수령

※ (유의사항) 교육청 연수대상자가 아닌 모든 유형은 '교사자격취득용 검사-대학'이라는 예약명으로 예약신청을 해야 함

[한국건강관리협회 예약 사례]

- ① 정교사(1급) 강릉 00고등학교 교사
- "교사자격취득용 검사 예약신청합니다. '강원'으로 예약 부탁드립니다."
- ② 충북의 00사범대학생 또는 서울의 교육대학원에서 전문상담교사자격을 취득하려는 교사
- "교사자격취득용 검사 예약신청합니다. 지역이 아닙니다. '대학'으로 예약 부탁드립니다."

참고**한국건강관리협회(메디체크) 전국 지부 현황**

연번	지부명	주 소	연락처
1	서울 서부	서울시 강서구 화곡로 335 (화곡6동 1097)	02-2600-2000
2	서울 동부	서울시 동대문구 왕산로 78 (용두동 112-1)	02-3290-9800
3	서울 강남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269 (신천동 7-18) 롯데캐슬프라자 5층	02-2140-6000
4	부산	부산시 동래구 총렬대로 145 (온천2동 1438-2)	051-553-6400~4
5	대구	대구시 동구 장등로 16 (신천동)	053-757-0500
6	인천	인천시 미추홀구 독배로 500 (송의동 163-22)	032-890-8700
7	울산	울산시 중구 번영로 360 (학산동 75-5)	052-241-2000
8	경기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857(조원동 779)	031-250-5800
9	강원	춘천시 남춘로 50 (효자2동 363-7)	033-260-0800
10	충북·세종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 631(봉명동 725)	043-297-1100
11	대전·충남	대전시 서구 계룡로 611 (탄방동 90-8)	042-532-9890
12	전북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40 (덕진동1가 1408-3)	063-259-8900
13	광주·전남	광주시 서구 대남대로 432 (농성동 638-11)	062-363-4040
14	경북·대구	대구시 북구 팔달로 23(노원동3가 523-3)	053-350-9000
15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삼호로 107 (양덕2동 524-2)	055-259-0100
16	제주	제주시 연북로 111 (연동 1375)	064-740-0200

※ 한국건강관리협회(메디체크) 홈페이지 : <http://www.kahp.or.kr>